

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신의료기술평가가 종료된 의료기술의 고시를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제13호를 별표에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- 192호

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5항에 의한 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- 180호, 2025. 10. 3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5년 11월 26일
보건복지부장관

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

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1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13. 당뇨병성 족부 궤양에서의 체외 충격과 치료 가. ~ 아. (생 략)	<u><삭 제></u>

13. 삭제 <2025. 11. 26.>